

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24. 11. 5. 조례 제368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도로터널·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·사고·재난 및 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터널 및 지하차도”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·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.
2. “터널진입도로”란 도로터널의 시·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.
3. “도로터널등”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.
4. “관리주체”란 안양시 관내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.
5. “유지관리”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·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로터널등의 환기시설·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, 교통 조건, 환경 여건, 터널의 제원,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등에는 화재감지기·비상경보·방송설비·유도표시판·피난

연결통로·비상주차대·물분무설비·소화설비·소화활동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·관리한다.

제5조(결빙방지 대책) 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,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력·장비 등의 확보)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·접근장비·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고관리체계)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·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제8조(안전관리 사업 계획) 시장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(예산 반영)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